

노 / 동 / 안 / 전 / 정 / 보

노동부, 화학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적 표준 조기 정착 추진

우리나라 생산현장의 화학물질 표시기준을 국제기준(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및 사용자 등 화학업계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표시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2월까지 전문화 교육,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제공 및 MSDS 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으로는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화학업체 안전·보건관리자, GHS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방법 등 교육 ▲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 ▲ MSDS 작성 지원을 위한 MSDS Editing 프로그램 구축 ▲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자료를 통한 GHS 제도 시행 홍보 ▲ 화학물질 분류·표시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이 있다. 이는 그동안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경고 표지의 이중 부착, 유해·위험 정보의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GHS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하고, 화학물질 분류 정보 확인, 경고 표지의 변경 또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촉진 대책 주요 내용

1. 화학물질 분류·표시 방법 등 교육

- 화학업체 밀집지역 순회 교육
 - 교육 기간 및 시기 : 1일('07.10월~11월)
 - 교육 지역 및 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화학업체 안전·보건관리자, GHS담당자 등
 - 교육 내용 : 화학물질 분류 세부기준, 경고 표지 및 MSDS 작성 방법 및 사례, MSDS 작성 프로그램 등
 - ※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적용 세부지침 마련('07.10, 안전공단)
-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전문화 교육
 - 교육 기간 및 시기 : 2일('07.12부터)
 - 교육 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의 GHS담당자 및 화학물질관리 담당자, 산업보건 서비스기관 담당자 등
 - 교육 내용 : 화학물질(제품)별 적용 실습, MSDS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MSDS 작성 실습 등

2.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 제공

-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위험 분류 정보 및 표시 정보를 Web 상으로 제공
 - '07.3 310종 → '07.10 910종(600종 추가) → '08.3 3,410종(2,500종 추가)
 - '08~12까지 매년 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를 2,500종씩 추가 제공 예정

3. MSDS 작성 지원을 위한 MSDS Editing 프로그램 구축 제공

- 화학물질 분류·표시 Editing 프로그램 개발
 - 시기 : '07.11(시연회 '07.10, 발표회 '07.11월)
 - 프로그램 내용 : 단일물질의 혼합비율에 따른 혼합물질의 GHS분류 정보 등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Editing프로그램 개발

4. 제도 시행 홍보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 세부지침 마련

-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자료를 제작, 유관기관 사업장 방문 시 및 세미나·교육 등 각종 행사시 배포
 - 노동부 정책 고객(PCRM 등)에게 e-mail 홍보 등
-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적용 세부지침 마련('07.10, 안전공단)

5. GHS 상담창구 운영

- 시기 : '07.9 부터
- 연락처 : 042-869-0312(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센터)
- 주요 상담 내용 : 기업에서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적용, 분류·표시 방법, MSDS 정보 탐색방법, MSDS 프로그램 지원 등 애로사항

교육 참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상담창구(☎ 042-869-0312, 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센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504-2054)으로 문의



MSDS의 개정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전문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GHS의 국내 정착은 국제기준에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화학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리 서비스기관 및 화학물질 수급업체(모기업)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기관의 협력 및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도를 통해 GHS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역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007. 10. 10 서울 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 박주정)은 관내 산업재해 및 작업관련성질환 감소 방안 마련을 위

한 『서울서부지역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관내 주요사업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 노무법인 경영안전 및 순천향대학병원 등 지역내 산업안전·보건 유관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 10명이 참석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확산 및 효율적 추진방안과 사망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협조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관내 작업관련성질환 등 업무상질병 증가에 따른 감소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업무상질병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기타의 각종사업 등에 대한 업종별 협의체 구성·운영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작업관련성질환을 지속적으로 예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그동안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및 기술지원, 간담회, 홍보 등 부단한 재해예방 노력뿐만 아니라 산재예방협의회의 효

율적인 운영으로 관내 재해율이 전년대비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7.6월말 현재 서울서부지청의 재해율은 0.24%로서 전년 동기 0.28%에 비해 0.04%P(14.3%) 감소하였고, 전국평균 재해율 0.36%보다는 무려 0.12%P(33.3%) 낮은 실정이며, 사망만인율 역시 0.72에서 0.34로 0.38%P(52.8%) 감소하였다

노사자율 재해예방 파트너십 협약체결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위



협성평가에 기반한 노사자율 안전관리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사자율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주)빙그레

등 관내 300인 이상 제조업 대형사업장 5개소와 2007.10.10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노사자율 재해예방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용택 의정부지청장은 협약체결 사업장에게 지속적인 노사자율 재해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장내 안전작업과 무재해를 당부하였고, 향후 프로그램 이행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산업안전보건관련 정부 훈·포상시 사업장 및 사업장 관계자를 우선 추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상반기 재해발생사업장 재해예방교육 실시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2007. 10. 4.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장에서 관내(서초구, 강남구) 5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 중 2007년도 상반기 재해발생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장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및 노·사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등을 강조하였다.

서울강남지청은 전년도 관내 재해율 증가의 원인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증가로 보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동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역점을 두고 '07년도 재해율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번 교육도 동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07년도 상반기 중에 2006년도 재해발생사업장 425개소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자료 배포, 교육, 점검 등의 집중적인 재해예방을 실시한 결과 '07년 6월말 현재 재해율이 0.15%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국 재해자가 513명 증가한데 비해 234명이 감소하는 등 동 사업이 관내 재해율 감소에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07년도 상반기 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이번에 한차례 더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재해예방 지도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지청장 : 송영기)은 10월 한달 동안 관내 지방자치단체 4개 구청(송파, 강동, 성동, 광진구청)의 2006년도 평균재해율이 2.71%로 같은 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1.17%를 상회하고 있어 조속한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게시 의무 이행여부, 산재발생보고의무 준수 여부, 산재기록 및 보존여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성 확보 여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조치 내용의 적정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또는 누락 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점검 전 사업장에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 노·사 협력적 자율점검 실시를 유도하

였다.

특히 2006년도 재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쓰레기, 재활용품 상차작업 도중 미끄러지는 재해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 지자체의 청소행정과 소속 현장근로자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청은 이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상회하는 관내 송파구청 등 4개 구청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유도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 산재예방활동 다각적으로 전개

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소장 나문섭)는 영월, 정선, 평창지역 대형공사 현장소장 협의회를 지난 10월 10일 한라건설(주) 평창-정선간 도로건설공사(2공구)에서 개최하였다.

관내 각 사업장 현장소장, 산업안전공단 강원지도원,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노동부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2007년도 법개정 내용 설명, 건설현장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방안, 산업재해사례 및 안전관리대책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영월출장소는 10월 16일 대회의실에서는 2007년 중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조사대상 사망재해가 500% 이상 증가(전년 3명→금년 15명)함에 따라 산업재해 현황 및 산업재해감소 방안과 법개정사항 등 안전한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업재해예방 결의 및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배호득)은 10월 5일 구미시 올림픽기념관에서 구미, 김천지역 안전·보건관계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노·사·정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노사화합 및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써, 구미지청장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에 노력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면서 “노·사·정 모두 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여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기업에는 노사화합을 계기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 부지사 등 유관기관 단체장 20명을 비롯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기업 안전관계자 2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산업재해예방결의대회 직후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석면 취급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 추진 계획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석면과 흡연에 비노출'된 경우를 1로 보았을 때 석면에만 노출된 경우는 5.2배, 흡연의 경우 10.8배,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되었을 경우는 53.2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의 위험성은 50~84배까지 증가(미국 ATSDR, 2006)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238조의4에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

지 못하도록 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규칙 제238조에도 흡연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경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흡연금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홍보 등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연 추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흡연시 과태료 부과 추진(노동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추진[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개정 추진('08.3.1시행 예정)]

▲ 석면취급사업장 지도·감독(노동부)

석면 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 등의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시 사업주의 경고표지 부착(보건규칙 제238조), 흡연금지(보건규칙 238조의4)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확인·지도하고,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검토·허가증 교부시 근로자에 대해 흡연금지 등 안내, 또한, 석면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도·점검 시 경고표지 부착(보건규칙 제206조), 흡연금지(보건규칙 제207조) 사항 이행 여부 등도 중점 확인·지도

▲ 석면취급사업장 금연지원사업(공단)

석면취급사업장은 CHP(포괄적 건강증진운동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역본부 및 광역지도원의 교육정보센터, 보건소와 협력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한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 등 금연사업 지원

▲ 기타

석면 제조·사용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시 흡연 실태조사 병행,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하여 금연에 대한 안내·홍보를 실시

